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11. 28.(월)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조)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황두영 의원 외 15명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우수공무원 포상, 위원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조문을 인용함(안 제3조, 제4조)
- 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제11조, 제13조)

4.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의견 반영(입법정책담당관실 법제조사팀)
- 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청 감사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교육청 감사관)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학생생활과)
- 해당부서의견 : 의견없음(감사관)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4. 검토의견

가. 제안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 정치·경제 및 사회구조 등이 급변함에 따라 교육행정도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공무원은 법령의 절차·요건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신속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추세임
-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 장려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기

존 적극행정 조례의 보완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를 신설하면서 기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았던 적극 행정 조례를 적용범위를 ‘경상북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각급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에 ‘지방공무원법’을 추가하였음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안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개정안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간사), 제9조(의견청취),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1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3조(운영세칙) 등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변경함.
 - ※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안 제7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대상을 정의하였음.
- 안 제12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20. 8. 25.자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반영하고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등 예상하지 못한 지속적인 위기상황 대처 등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복합적인 행정환경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필요성을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와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함.
- 다만,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또한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개선 하고 면책제도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